

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제출 안내

다자녀 특별공급 제출서류

구분	서류유형		해당서류	발급기준	서류 제출 대상 및 유의사항
	필수	추가 (해당자)			
공동 서류	○		신분증	본인	•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(주민등록번호 뒷자리포함만 인정) ※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통(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통)
	○		인감증명서,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	본인	•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 [용도 : 주택공급신청용] ※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인 신청 및 계약 불가
	○		주민등록표등본(상세)	본인	• 성명,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
		○		배우자	• 주민등록표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(상기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)
	○		주민등록표초본(상세)	본인	•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변동사항 및 사유 및 발생일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
	○	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본인	• 성명,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 뒷자리 전부 공개하여 "상세"로 발급
	○		혼인관계증명서(상세)	본인	• 성명,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 뒷자리 전부 공개하여 "상세"로 발급
	○		출입국사실증명서	본인	• 성명,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, 기록대조일을 생년월일~입주자모집공고일로,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"Y"로 설정하여 발급
○		복무확인서	본인	• 수도권 외 지역에 거주하는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기타지역으로 당첨된 경우 - 군복무기간 10년 이상을 명시	
다자녀 특별공급	○		주민등록표등본(상세)	직계비속	•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
	○		주민등록표초본(상세)	피부양 직계존속	•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정을 인정받고자 하나, 주민등록표상 주택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"전체포함"으로 발급 요망
	○	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배우자	• 3세대 구성 시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포함 된 경우 • 재인가정의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 한 경우(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안함) ※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포함) 전부공개 "상세"로 발급
	○		혼인관계증명서	피부양 직계비속	• 만 18세인 직계비속을 미성년자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"상세"로 발급
	○		한부모가족증명서	본인	• 공급신청자가 「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」 제3조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5년이 경과한 경우
	○		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	본인 (또는 배우자)	• 임신한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※ 임신진단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의료 기관명(국내의료기관으로 한정)과 임신 주차 기재 필수
	○		임신증명 및 출산 이행 확인각서	본인 (또는 배우자)	• 접수장소에 비치
	○		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	본인 (또는 배우자)	•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
해외 근무자 (단신 부임) 입증 서류	○		해외체류 증빙서류	본인	•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•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: 파견 및 출장명령서 •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: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,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• 근로자가 아닌 경우 아래 사항 반드시 제출 : ①비자 발급내역 ②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※ 유학, 연수, 관광,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, 생업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자 또한 인정 안됨
	○		출입국사실증명서	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	• 배우자 및 세대원이 생업 등으로 해외 체류 여부 확인 • 성명,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, 기록대조일을 생년월일~입주자모집공고일로,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"Y"로 설정하여 발급
	○		비자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	본인 및 세대원	•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※ 비자발급내역,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당첨자(공급신청자)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(국외 체류기간 연속 90일)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
부적격 통보를 받은자	○		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	해당주택	• 등기사항전부증명서, 건축물대장등본, 무허가건축확인서, 건축물철거명실신고서 등 •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
	○		당첨사실 소명자료	본인	•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
대리인 신청시 추가서류	○		인감증명서, 인감도장	본인	•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 [용도 : 위임용(본인 발급용)] ※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
	○		위임장	본인	• 당첨자의 인감도장 날인 (건본주택 비치)
	○		신분증 및 인장	대리인	•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(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) • 외국인인 외국인등록증 사본 (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)

- ※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(2023.10.20) 이후 발행분에 한합니다.
- ※ 본 안내문은 청약자격과 관련한 간단한 내용만을 요약하였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※ 본 안내문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요약·편집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, 오류가 있을 시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.
- ※ 당첨자 서류 제출 및 적격 심사 과정에서 사업주체의 추가 서류 제출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.

※ 본 자료는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된 것으로 대표전화로 문의하시거나, 청약신청 전 입주자모집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